

『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출생신고 시 정부3.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제공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
-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다자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추가(안 제6조, 안 별지 제1호의2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
 -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사회복지과와 합의됨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,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(2016.3.10),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8조의 개정사항에 따라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별지 서식 “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”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